

2023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1443
----------	------

2023년 12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I. 심사경과

1. 제출일자 : 2023. 10. 16
2. 제안자 : 서울특별시장
3. 회부일자 : 2023. 10. 23
4. 상정일자 : 제32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2023. 12. 1)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2023. 12. 4)
 - 안건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2023. 12.14)
 - 수정안 가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 (기획조정실장)

- 의안번호 1443호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등 6개 기금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6개 안건은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제2항에 의하면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어, 6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승인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 안건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계획변경안은 서울에너지공사의 재정 적자 보전을 위해 용자금 713억원을 신규 반영하고 예치금을 713억원 감액 하였습니다.

 - 중소기업육성기금 사회적경제계정 운용계획변경안 등 5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2022회계연도 결산 결과 확정된 예치금 회수 등 재무활동 조정 등으로 인한 2023년도 수입·지출계획의 변경으로, 시의회 의결 규모 대비 총 420억원의 지출계획이 증액되었습니다.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엄지운)

1. 제안경위

- 의안번호 제1443호, **2023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은 2023년 10월 16일 서울특별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경제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것임

2.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관련 검토

1) 제안이유

- 가. 연료비 상승, 열요금 인상 제한으로 발생한 서울에너지공사 재정 적자 보전을 위한 공사 용자금을 반영하기 위해,
- 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서울특별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연료비와 열요금 간 불균형으로 발생한 서울에너지공사 유동성 위기에 따른 연말 부족자금 보전을 위해 용자금 신규 반영
- 나. 운용규모 : 1,391,634백만원(당초 운용규모 대비 변경사항 없음)

<수입계획 변경내역 >

(단위 : 백만원, %)

구 분	당 초 (A)	기 금 운 용 계획 변경안(B)	증 감 (C=B-A)	증 감 율 (D=C/A)
합 계	1,391,634	1,391,634	-	-
용 자 금 원 리 금 회 수	6,067	6,067	-	-
예 수 금	1,119,594	1,119,594	-	-
예 탁 금 원 금 회 수	13,920	13,920	-	-
이 자 수 입	41,010	41,010	-	-
예 처 금 회 수	211,043	211,043	-	-

<지출계획 변경내역>

(단위:백만원, %)

정책사업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편성목	당 초 (A)	기 금 운 용 계획 변경안(B)	증 감 (C=B-A)	증 감 율 (D=C/A)
합 계	1,391,634	1,391,634	-	-
투 자 기 관 금 용 지 원	150,000	221,300	71,300	47.5
공 사 용 자 지 원	150,000	221,300	71,300	47.5
공 사 직 접 용 자	150,000	221,300	71,300	47.5
용 자 금	150,000	221,300	71,300	47.5
재 무 활 동	1,241,627	1,170,327	△71,300	△5.7
내 부 거 래 지 출	1,079,007	1,079,007	-	-
기금특별회계용자지원	1,079,007	1,079,007	-	-
예 탁 금	953,340	953,340	-	-
예 수금원리금상환	125,667	125,667	-	-
보 전 지 출	162,620	91,320	△71,300	△43.8
여 유 자 금 예 처	162,620	91,320	△71,300	△43.8
예 처 금	162,620	91,320	△71,300	△43.8
행 정 운 영 경 비	7	7	-	-
기 금 관 리 비	7	7	-	-
기 금 관 리 비	7	7	-	-
일 반 운 영 비	7	7	-	-

○ 수입계획변경 : 변경사항 없음

○ 지출계획변경

- 용자금 71,300백만원 증가 (150,000백만원→221,300백만원)

▶ 서울에너지공사 재정지원을 위해 용자금 증가

- 예치금 71,300백만원 감소 (162,620백만원→91,320백만원)

▶ 수입·지출 변동을 반영하여 예치금 조정

3. 검토의견

-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은 서울에너지공사의 재정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수입계획 변동없이 지출계획의 정책사업 중 ①**재무활동(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713억원)과 ②**투자기관금융지원**(713억원)을 증·감 조정하려는 것임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¹⁾는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를 초과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하고 있는바,
 - 정책사업인 ①**재무활동(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은 당초 지출계획(1조 2,416억 2,700만원)보다 △5.7%, △713억원을 감액하여 지출계획 하려는 것으로 지출금액의 10분의 2를 초과하지 않아, 의회의 의결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나, 다른 정책사업인 ②**투자기관금융지원**은 당초 지출계획(1,500억원)보다 47.5%, 713억원을 증액하여 지출계획 하려는 것으로 의회로부터 의결이 필요한 사안에 해당됨

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의 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생략)

〈표 3-1〉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단위 : 백만원, %)

정책 사업 / 단위 사업 / 세부 사업	당 초 (A)	기 금 운 용 계획변경안 (B)	증 감 (C=B-A)	증 감 륜 (D=C/A)
지 출 합 계	1,391,634	1,391,634	0	-
투 자 기 관 금 용 지 원	150,000	221,300	71,300	47.5
공 사 용 자 지 원	150,000	221,300	71,300	47.5
공 사 직 접 용 자	150,000	221,300	71,300	47.5
재 무 활 동	1,241,627	1,170,327	△71,300	△5.7
행 정 운 영 경 비	7	7	0	-

※ 자료근거 : ①2023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지출계획,
②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23.10.16) 재구성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 대한 동 변경안은 연료비와 열요금 간 불균형 등으로 발생한 서울에너지공사 부족자금 713억원²⁾에 대해 동 계정을 통해 용자하여 재정지원을 하려는 것임

- 다만, 행정안전부의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른 '공사·공단 등 용자금'³⁾은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매출공채 등(지방채)을 통해 지방공사·공단에 용자하는 용자금의 편성은 지방채 발행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으로 기재하고 있음

2) 서울에너지공사, 예산재정-831('23.10.11) “서울에너지공사 서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용자요청 검토결과”
- 러·우 전쟁 영향으로 '21년 이후 연료비는 173% 인상된 반면, 같은 기간 열요금은 38% 인상에 그쳐 심각한 재정불균형 발생(한국전력공사 누적적자 200조원, 한국가스공사 미수금 12조원 등 동일 재정난 발생)
- 2023년말 부족 자금 : 713억원

(단위: 억원)

자금수입 (A)	자금지출 (B)	부족자금 (C=B-A)	자구노력 및 자금일정 조정(D)	실 부족자금 (C-D)	비 고
3,470	4,483*	1,013	300	713	자구노력 및 지출일정 조정 통한 차입금 최소화

* 2022년 부족 자금 이월 263억원 포함

3) 행정안전부,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22. 7), p.121
공사·공단 등 용자금 :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매출공채 등(지방채)을 통해 지방공사·공단에 용자하는 용자금

- 서울시의 경우에도 지난해 12월, ‘공사·공단 등 용자금’에 대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로부터 지적받은⁴⁾ 이후, 지난 2월, 행정안전부에 ‘공사·공단 등 용자금’을 지방채 발행 없이도 공사·공단에 용자할 수 있도록 개정 필요한 것으로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됨⁵⁾
- 그러므로 ‘공사·공단 등 용자금’은 지방채 발행을 통해 지원하는 것이 관련 기준을 준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점에서 ‘공사·공단 등 용자금’에 대한 개선 요구와 운영기준 명확화 등이 요구되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됨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22. 12), p7

5) 서울특별시, 예산담당관-2452 (’23. 2.24) “2024년도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등 개정 의견제출”

현 행(’23년 기준)	개 정 안(’24년 기준안)
500 용자 및 출자 501 용자금 03. 공사·공단 등 용자금 1.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매출공채 등(지방채)을 통해 지방공사·공단에 용자하는 용자금	500 용자 및 출자 501 용자금 03. 공사·공단 등 용자금 1.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방채 및 자체재원을 통해 지방공사·공단에 용자하는 용자금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생략」

VI. 수정안의 요지 : 「생략」

VII. 부대의결 : 「생략」

VIII.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2023.12.14)

◇ 첨부 : 2023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수정안 1부. 끝.

2023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1443
----------	------------

2023년 12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수정 이유

「2023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2. 수정 주요 내용

「2023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별첨과 같이 수정·의결한다.

◇ 첨 부 : 2023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수정안 1부. 끝.

2023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수정안

□ 총 괄

(단위 : 천원)

기 금 명	당초 운용계획안	조 정 내 역			수정 운용계획안
		소 계	증 액	감 액	
계	1,391,633,706	△70,000,000	-	△70,000,000	1,321,633,706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1,391,633,706	△70,000,000	-	△70,000,000	1,321,633,706

□ 세부 수정내역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 수입계획

(단위 : 천원)

과 목		제 출 안	수 정 안	증 감	수 정 내 역
장 관 항	목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1,391,633,706	1,321,633,706	△70,000,0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379,886,380	1,309,886,380	△70,000,000	
내부거래		1,168,843,415	1,098,843,415	△70,000,000	
예탁금및예수금		1,168,843,415	1,098,843,415	△70,000,000	
	(722-01) 예수금수입	1,119,594,000	1,049,594,000	△70,000,000	○ 예수금 수입 1,119,594,000 → 1,049,594,000 (△70,000,000) · 주택사업특별회계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계정 420,000,000 → 384,000,000 (△36,000,000) · 도시개발특별회계 41,600,000 → 31,600,000 (△10,000,000) ·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33,700,000 → 9,700,000 (△24,000,000)

- 지출계획

(단위 : 천원)

과 목			제 출 안	수 정 안	증 감	수 정 내 역
정책 사업	단위 사업	세 부 사 업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1,391,633,706	1,321,633,706	△70,000,000	
재무활동(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1,170,326,706	1,100,326,706	△70,000,000	
	내부거래지출(통합계정)		1,079,006,390	1,009,006,390	△70,000,000	
		기금 및 회계 용자 지원	1,079,006,390	1,009,006,390	△70,000,000	(704-01) 예탁금 ○ 기금 및 회계 용자 지원 953,340,000→883,340,000 (△70,000,000) · 교통사업특별회계 교통관리계정 227,540,000 → 177,540,000 (△50,000,000) · 도시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 0 → 50,000,000 (50,000,000) · 주택사업특별회계 국민주택사업계정 295,600,000 → 225,600,000 (△70,000,000)